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규제

〈지난호에 이어〉

2-2-5.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설치허가, 신고, 변경허가, 변경신고)

〈타법령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 허가기관은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와 관련한 입지제한 건축물의 건축제한 여부등 수질환경보전법령외의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를 해당부서(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타법령 검토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관계법령을 운영하는 중앙 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게 된다.

○ 대표적인 검토대상 관계법규(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8조의2
② 공해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6, 27조
③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④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⑤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6조
⑥ 도시계획법 제4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9조의4, 제20조
⑦ 건축법 제8조,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내지 제81조
⑧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⑨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⑩ 학교보건법 제6조
⑪ 수도법시행령 제5조 등
⑫ 농공단지 개발시책통합지침, 지자체 조례등 기타 관계법규

2-3. 방지시설의 설치 등

>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제11조제1항).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법 제11조제4항 내지 제6항)〉

-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봄
-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공동방지시설 설치시 제출서류

1.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2.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예측서
3. 사업장별 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에 관한 서류, 공정도 및 폐수 배출 배관도

공동방지시설 설치시 제출서류

4.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설치도면 및 명세서
5.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착대상인 사업장에 한한다.)
6.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오염물질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 · 과태료 · 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내역을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미리 정하여 분담

※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의 개정(2005. 3. 31일 시행) 규정에 의해 배출부과금 부과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에게 부과하던 것을 개별 배출업소에 부과하도록 변경

□ 방지시설설치 면제기준 (영 제4조)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 기타 발생폐수의 전량 재이용 등 방지시설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시행규칙 제21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 (규칙 별표6)

1. 영 제4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
   가. 삭제 (99.8.9)
   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원료, 부원료등을 바꾸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영 제4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전량 위탁처리)
   가. 발생된 폐수는 폐수처리업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 ·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수위탁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에 한한다.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 (규칙 별표6)

   다. 사업장안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성상별로 발생량의 5일분이상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간이측정자?눈금등)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된 폐수를 이송저장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에서 직접 위탁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별도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폐수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출판 · 인쇄, 자동식사진처리, X-Ray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현상액과 정착액 및 세척액은 각각 분리수거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20ℓ 합성수지용기에 윗부분과 양측면에 가로 10cm, 세로 4cm 크기의 바탕에 현상액의 경우는 황색바탕에 검정글씨로 "현상폐수", 정착액의 경우는 녹색바탕에 검정글씨로 "정착폐수"라 한다. 다만, 소규모 자동식 사진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세척액의 오염물질농도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하인 경우에는 위탁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수수탁처리업자와 폐수인계 · 인수에 따른 폐수수탁처리확인서에 서로 날인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바.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휴업, 폐업,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의 일시정지등의 사항에 대하여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새로운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와 계약을 하여 처리하는 등 폐수처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 매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위탁처리폐수에 대한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폐수수탁처리업소등을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아. 삭 제(2003.6.17)

3. 영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전량 재이용)
   가. 자가처리의 대상시설에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고장 또는 수리등으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와 공정중에 순환재이용하다가 재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폐수등 액상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영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거나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다. 매년 다음해 1월 10일까지 폐수처리상황을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운영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포함)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법 제38조제1항).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규제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침사시설, 유수분리시설, 유량조정시설(침수조)이 최종처리시설이 아닌 경우로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아니하고, 직접 최종방류구에 유입시키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정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제38조제3항)

– 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기타 시설운영에 중요한 사항 등을 매일 기록한 운영일지를 최종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전산기록?보존 가능)

②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영 제11조제1항)

– 평상시 사업자가 다음의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인정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 측정기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 · 변경 또는 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 측정기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적정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단전 · 단수로 측정기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천재 · 지변 ·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측정기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 또는 이상물질 유입 등으로 인하여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초과배출부과금 항목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및 사업장 종별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2-5 측정기기 부착(법 제15조제3항)

–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장의 규모,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고시(시행규칙 제27조)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대상사업장〉

(환경부 고시 제1999-135호 : 99. 9. 2)

측정기의 종류		부착대상 사업장
적산전력계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내지 5종사업장
적산유량계	용수량 측정기	위와 같음
	폐수량 측정기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내지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량이 1일 30㎥이상인 사업장

비 고 : 1. 사업장의 지역적인 여건 또는 폐수의 특성이 달라 방지시설을 2개이상 설치 · 가동하는 사업장은 각각의 방지시설별로 배출되는 폐수량에 따라 규모를 산정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적산전력계, 폐수량측정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대상사업장〉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로서 폐수방류구별 폐수배출량이 4종규모이상인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인 경우에는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폐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순환·재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폐수에 대한 용수량측정기 및 폐수량측정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질원격감시체계(TMS)구축계획안 (시행규칙 개정시 변경될 수 있음)

○ 수질 TMS 관제센터 설치 : 환경관리공단 (1개소)

○ 수질 TMS 연결대상 사업장 : 1일 처리능력이 200㎥ 이상인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1-3종 사업장

* 제외대상 사업장 : 4-5종 배출사업장, 하·폐수종말처리구역내 배출사업장

○ 수질 TMS 관제센터에 배출사업장을 단계별로 연결

*'07년 : 1 - 2종 배출사업장

*'08년 : 3종 배출사업장

○ 부착대상 자동측정기의 종류 : BOD, COD, SS, TN, TP 등 9개 항목

2-6 개선·조업정지 명령 등

□ 개선명령

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개선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

② 개선기간

- 시·도지사는 1년의 범위내에서 개선 기간을 정함.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시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연장 가능

③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최근 2년 이내에 3회이상(당해 초과횟수를 포함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하거나 개선계획서를 제출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조업정지명령

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법 제40조).

자료제공 : 환경보전협회 환경연수부

다음호에 계속 …